

의안번호	2204882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4. 10. 29.
추계번호	24B450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상생기금은 <u>정부와 정부 외의 자가</u>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함(제3항)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방법에 ‘정부 외의 자’에 더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현금 등을 포함함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u>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u>(제5항) 1. <u>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함)</u> 2. 수혜기업¹⁾에게 상생기금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이 경우 정부는 재단에 출연 협조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음	의무규정
2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u>20년간 효력</u>을 가짐 ※ 현재 상생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1조원 규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20년간 조성(2조원 규모)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의무규정

1)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협정 체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하 “수혜기업”이라 한다)은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여건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2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

- 농어촌상생기금(이하 “상생기금”)²⁾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
 - 상생기금 출범 이후 총 2,449억 1,235만원 출연 협약체결('24. 8월 현재)
 - － (출연) 공공기관 61.0%, 민간기업 38.7%, 개인·기타 0.3% 차지
 - － (2024년 조성액) 8월말 기준 151억원
 - － (기금운용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참고자료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현황 및 [참고자료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 참고

2) 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1]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	2	301	68	39	30,965
2018	30	17,930	9	5,215	27	14	23,159
2019	43	17,543	26	5,045	9	5	22,593
2020	65	20,435	76	17,053	16	107	37,595
2021	94	25,739	70	19,684	5	102	45,525
2022	102	16,398	111	18,792	7	226	35,416
2023	117	13,387	103	16,941	5	167	30,495
2024.8	65	7,185	59	7,851	5	78	15,114
다년협약 잔여분	2	270	3	3,780	—	—	4,050
총 계	134	149,512 (61.0%)	208	94,662 (38.7%)	130	738 (0.3%)	244,91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정부 출연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유효기간—기금 조성기간을 20년으로 연장(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금 조성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정부 출연) 현행법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등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부’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금 조성기간 연장) 현행법은 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조성기간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년간’ 조성하도록 규정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변경

	현행	개정안
재원조성방법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
조성기간	10년간	20년간

- 특히, 개정안은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명시하고 있고, 그 기준금액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수혜기업의 출연 규모 및 상생기금 총 조성액의 과부족 여부, 상생기금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여부 및 전입 금액, 전입 금액의 기준이 되는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최근 10년간 관세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3] 연도별 관세 징수실적: 2014~2023년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관세	87,210	84,954	80,454	85,292	88,152	78,821	70,585	82,270	103,241	72,883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공개 정보 > 사전공개 정보목록 > 행정정보자료실 > 관세 등 징수실적(2023년)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10260&bbbsId=1877&nttSn=10107398&nttSnUrl=123b785de830febaae0e8b570b9138db>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설립목적

-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촌·농어업인의 상생협력을 도모

□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³⁾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⁴⁾

□ 연혁

- '04.12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및 출범
- '17.01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칭 변경
- '17.11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법제화('18.5.29 시행)
- '22.03月: 김영환 사무총장(제6대) 취임

□ 역할 및 기능

-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조직 및 인원

- (조 직) 1처 4본부 2실 17부 3팀 / (인 원) 196명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조직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https://www.win-win.or.kr/kr/pages/about/organ.do>> (접속: 2024.7.30.)

□ 예결산 현황

<최근 4년간 재단 예산 및 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소관 부처 등	주요 사업	2021		2022		2023		20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생태계사업, 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 등	44,257	38,043	41,097	39,100	42,040	36,398	38,67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운동	152	152	146	146	138	138	-
	농림축산식품부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홍보	515	513	500	498	222	221	242
	해양수산부	-	-	-	-	-	-	-	-
	소계		44,924	38,708	41,743	39,744	42,400	36,757	38,921
정부 외	위탁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	27,458	23,485	31,156	25,445	27,305	23,116	26,700
	민간 출연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413,276	289,242	474,963	366,398	419,460	466,366	360,112
	자체수입		5,749	4,645	9,472	1,818	19,381	3,609	11,158
	소계		446,483	317,372	515,591	393,661	466,146	493,091	397,970
합계			491,407	356,080	557,334	433,405	508,546	529,848	436,89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

[참고자료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현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內)

- (설립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설치
- (법적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⁵⁾
- (연혁)
 - '15.11.30. 한·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여야정 합의
 - '16.06.24. ‘FTA농어업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 (FTA농어업법) 기금 관리·운용주체(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용도 규정, (상생협력법) 재단명에 ‘농어업’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의 10% 법인세액 공제
 - '17.01.17. 국회 본의회 통과에 따른 3개 법률 시행
 - '17.03.30.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및 제1기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 출범
 - '19.11.28. 기업요청에 따른 농어촌상생기금 현물(물품)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FTA농어업법’ 개정 및 시행
 - '21.05.14. 제2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 곽수근 서울대 교수) 출범
 - '23.05.28. 제3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 곽수근 서울대 교수) 출범
- (역할 및 기능) 농어촌상생기금 관리·운용
- (주요사업) ①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②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③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사업, ④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 이익을 증진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하기 위한 공동협력사업, ⑤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등

○ (조직 및 인원)

- 운영본부(17명): 본부장 1명, 부장 2명(운영부/관리부) 부서원 14명(운영부 7, 관리부 7)
- 운영위원회(17명): 위원장 1명, 운영위원 16명(농어업계 4, 기업계 4, 공익대표 4, 정부 4), 간사 1명(운영본부장)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지원 현황('24.8월말 기준)

- 기금 조성 총계: 2,449억 원, 342개사(개인 제외) 출연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	2	301	68	39	30,965
2018	30	17,930	9	5,215	27	14	23,159
2019	43	17,543	26	5,045	9	5	22,593
2020	65	20,435	76	17,053	16	107	37,595
2021	94	25,739	70	19,684	5	102	45,525
2022	102	16,398	111	18,792	7	226	35,416
2023	117	13,387	103	16,941	5	167	30,495
2024.8	65	7,185	59	7,851	5	78	15,114
다년협약 잔여분	2	270	3	3,780	-	-	4,050
총 계	134	149,512 (61.0%)	208	94,662 (38.7%)	130	738 (0.3%)	244,91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농어업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하고 있음

<최근 4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 관련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 내용	2021		2022		2023		2024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농식품부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홍보	515	513	500	498	222	221	242
해수부	-	-	-	-	-	-	-	-

*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홍보는 FTA기금사업인 농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세부사업)'으로 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